

너무도 보편화되어버린, 그래서 위험한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 경험을 ‘성폭력’이라 명명하고 그것을 사건화 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현재가 있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물론 그 ‘해결’이라는 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담론화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꼽았던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이제 성폭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여타의 사회 조직들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대학 내에서 이 개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보편화되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적어도 대학 내에서만큼은 성폭력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긴밀한 연관 관계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수준인 것 같다. 문제는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문제’로서 지적해야만 했던 반성폭력 운동의 초창기와, 그것이 ‘개념’으로서만 일지연정 보편화되어있는 지금의 상황은 적어도 대학 내에서만큼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해 나아감에 있어 이러한 정세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다른’이야기를 꺼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할 때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의 보편화로 인해 성폭력 사건화 과정에서 이 개념이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 개념이 보편화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성폭력에 대한 개념상의 보편화라는 것이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꺼내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것이 오용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사안에 직면했을 때 더욱 큰 어려움을 주는 담론과 상황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건대 이 문제를 덮어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에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자명하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분명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그것이 사건화 되었을 때 역시 가해자는 그 권력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정한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경험 하나만으로 정당한 해결 과정을 밟거나 합당한 해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경험과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당연한 원칙으로 강조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이러한 특성 상,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이것이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오용될 수 있는 틈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이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성폭력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는 가해자?’

지난해 11월 총여학생회 선거를 치르면서 학내 언론사들과의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나친 피해자 위주의 사건 처리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가해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폭력 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소위 ‘가해자 인권론’이다. 이 가해자 인권론은 구체적으로는 위의 질문과 같이 과반 동아리 등에서의 가해자 동정론, 옹호론으로 퍼져 있으며 담론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단체의 장 등이 가해자인 경우 명예훼손 역고소라는 명백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 경합적 가치로서의 인권

가해자 인권론이 사용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은 구성되고 쟁취되는 경합적, 과정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제 권력과 관계없이 추상적, 초월적으로 선제하는 당위적 개념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는다는 근대적인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급진적인 동시에 대단히 문제적인 아이디어이다.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지향으로서의 이상적 가치이지 현실이 아니다. 인권 담론은 다른 사회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계급, 성별, 인종, 나이, 성 정체성을 둘러싼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인권은 언제나 매 순간 각 정치 세력들의 투쟁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정의, 재구성되는, 피억압자의 개입을 기다리는 과정적 개념이다. 인권이 구성되는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배세력의 시각에서 구성된 입장이 마치 전체 인간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강자의 권력 수단으로 사용된다.

####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 권력

성폭력 가해자 인권론은 인권을 경합적 가치로 사고하지 않는 보편적 인권론의 허구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폭력을 대하는 시선은 여전히 피해여성의 진술보다는 가해 남성의 주장을 신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폭력은 범죄 사실이 인지, 인정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절도 등의 다른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왜 그때 그 자리에서 돈을 갖고 있었는지’ ‘아무리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지만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집요하게 던져지며 피해사실의 객관성이 끊임없이 의심받는다. 이것은 성폭력을 둘러싼 피해 여성의 인권과 가해남성의 권력이 경합하는 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여성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자체만으로 주변에서 가하는 피해사실에 대한 의심과 문제제기를 무화시키려는 압력 등,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다. 애초에 성폭력은 성별 위계화된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억압을 ‘폭력’으로 명명하고 가시화한 것이지만, 성폭력을 사실로 구성하고 인정받는 과정자체도 성별위계화된 담론권력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폭력 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여성을 괴롭히는 행위를 가해자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인권론은 성폭력을 둘러싼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삭제한 채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에 편승한 가해남성의 2차 가해 행위를 보편적인 인권 개념으로 옹호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 개념과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이 법의 영역에서나, 일상의 영역에서나 모두 여성의 입장이 아니라 남성의 경험과 이해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5000년이 넘는 성별 권력 관계의 이러한 역사성을 무시한 채, 피해여성의 인권과 가해 남성의 권력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남성의 특권을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삭제되는지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가해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가해자의 인권이란 아주 기본적인, 사건 조사나 처리 과정에서 신체적인 위협, 협박을 받지 않은 권리 혹은 애초에 허위사실로 인해 가해자로 몰리지 않은 권리 등을 말하는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포되고 있는 가해자 인권론의 내용은 가해사실 자체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핵심으로 하는 가해자의 반성 없음을 옹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